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 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반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포결제도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 조문 반영
- 나. 포결 시 기록포결 원칙 및 회의록 공개 규정(안 제40조, 제47조)
-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조)
-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규정(안 제55조의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 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 을 “제72조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인터넷” 을 “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고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 단서 중 “간사” 를 “부위원장”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선포” 를 “의장석에서 선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 전자투표” 를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각각 “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 중 “간사가” 를 “부위원장이” 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 를 “법 제91조” 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 를 “법 제98조” 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징계에 대한 자문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은” 을 “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 는”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 ----- ----- ----- ----- ----- ----- -----</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p> <p>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6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제72조제1항-----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 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p>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lt;삭 제&gt;</p>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8조의2(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  
-----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의2(조례안 예고) ① -----

-----  
-----  
-----  
----- 의회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③ (생략)

제24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외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고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안건심의) ① -----  
-----  
-----  
----- 부위원장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  
----- 의장석에서 선포 -----  
-----.

② (현행과 같음)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48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

② 법 제75조제1항 -----  
-----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  
-----  
부위원장과 -----.

제5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  
-----

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  
를 들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  
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설>

<신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제55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  
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  
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  
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  
을 따른다.

제55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생략)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인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부위원장이 -----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 법 제98조-----  
-----  
-----  
-----.

② ~ ⑤ (생략)

<신설>

제86조(준용규정)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징계에 대한 자문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 본다.